

kiri Weekly

2013.1.7 제215호

이슈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

포커스

기술진보에 따른 보험판매채널의 변화 방향과 시사점

금융보험 해설

손해보험의 이해 (15): 정책성보험의 개념 및 종류

국내금융 뉴스

재보험 해외수지 적자 규모 축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해외금융 뉴스

북미 _ 재정절벽 협상안 타결

유럽 _ 프랑스, 부유세 법안 수정 불가피

일본 _ 아베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긍정적 전망 확산

중국 _ 12월, 제조업 경기 확장세 지속

금융시장 주요지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도 개선 방향

이상우 수석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원

요약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니즈 증가, 개인형 퇴직연금 시행 등으로 가입자 스스로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운용하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미국 및 일본에서도 퇴직연금 부실운영 이후 이해상충을 개선하기 위한 보완장치로 가입자 교육을 최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최근 퇴직연금 실태조사 결과 가입자의 약 35%가 교육경험이 없는 등 교육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가입자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 범위, 세부기준, 교육전문가,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행 법령에서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 중심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연금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 은퇴 후 퇴직연금 활용방법, 다양한 적립금 운용상품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법령에서 가입자 교육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교육제공 가이드라인이나 모범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식화될 우려가 상존
 - 가입자가 정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제공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입자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법령에서는 수탁자(사용자 또는 금융회사)만이 가입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질의 가입자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함.
- 가입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지식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퇴직연금 제도개선이 필요함.
 - 현행 법령상 가입자 교육 범위를 퇴직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노후설계, 운용될 금융상품의 이해, 자산운용 기초지식, 연금운용 등으로 확대
 - 가입자 교육의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
 -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 교육 세부내용 명시
 - 일본 사례처럼 가입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개발 필요
 - 객관적이고 정확한 가입자 교육 제공을 위하여 제3의 가입자 교육서비스 제공기관 설치를 검토할 필요

1. 서론



- 최근 개정 법률 시행 후 확정기여형제도 가입 니즈 증가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가입자 선택 폭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운용하기 위한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수탁자로서 수탁할 경우 적용되는 사용자의 성실의무로서 중요한 책무이며, 이에 따라 국내외 퇴직연금 관련 법률에서는 가입자 교육을 그 효과에 관계없이¹⁾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규율하고 있음.
 - 사용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제도의 경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기업의 사후적 급여제도로서 안정된 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의 적립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수령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퇴직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함.
 - 더욱이 가입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함.
- 2012년 일본에서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부실운용과 가입자에 대한 잘못된 교육으로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이후 수탁자의 감시기능과 함께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이 최근 부각되고 있음.²⁾
 - 우리나라에서도 가입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상충(사용자가 또는 금융회사가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임의로 적립금을 운영할 가능성)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부정확하거나 양질의 교육내용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심화로 인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부실운용을 근로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가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으며, 가입자 교육체계 또한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보고는 가입자 교육 관련 규정과 교육현황, 그리고 가입자 교육의 문제점을 선진사례와 대비하여 살펴보고 바람직한 가입자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1) James J. Choi 외(2002)는 퇴직연금 적립률과 자산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금의 세부 특징을 검토한 결과 퇴직연금 교육이 투자 선택의 질 향상에 대하여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함.

2)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 엔론, 월드컴 등의 파산으로 자사주에 투자한 401(k) 가입 근로자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자사주 위험에 대한 가입자 교육을 강화한 퇴직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이 2006년에 제정됨.

2. 가입자 교육 관련 규정



- 퇴직연금에 있어서 가입자 교육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입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가입자 교육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이해 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적립금 운용이 편중될 수 있으며, 가입자에 대한 부실한 정보제공과 금융회사의 부실한 적립금 운용으로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이 존재함.
- 우리나라의 법령은 가입자 교육을 사용자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에 대한 교육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조하도록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 교육 의무이행은 사용자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가 주체가 되며, 이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함.

〈표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제공 관련 법령

개정 근퇴법	근퇴법 시행령
<p>제32조(사용자의 책무)</p> <p>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사업의 퇴직연금 운용상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p> <p>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2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p>4. 법 제32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조할 것</p>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사항은 공통교육 사항, 확정급여형(이하 ‘DB형’이라 함)제도와 확정기여형(이하 ‘DC형’이라 함)제도 추가 교육내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³⁾

- 퇴직연금 가입자 공통교육 사항

-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급여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담보대출 등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표 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공통사항

<p>제33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p> <p>가. 급여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p> <p>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p> <p>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p> <p>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p> <p>바.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p> <p>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p>

- DB형제도 가입자 추가교육 사항

- 가입자 수급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기타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사항 등을 교육

- DC형제도 가입자 추가교육 사항

- 수급권 보호와 적립금 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 분산투자, 적립식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교육
- 특히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과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퇴직 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율

3) 세부적인 가입자 교육관련 법령은 [별첨1] 참조.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방법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은 제도 공통교육 사항, DB형제도, DC형제도 구분에 따라 상이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
 - 가입자 공통교육 사항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 DB형제도 가입자의 경우 ① 정기적인 교육자료 발송(서면·이메일 등) ② 대면(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교육 ③ 온라인교육 ④ 사업장에 게시 등으로 제공
 - DC형제도 가입자의 경우 상기 DB형제도 ①~③의 방법
-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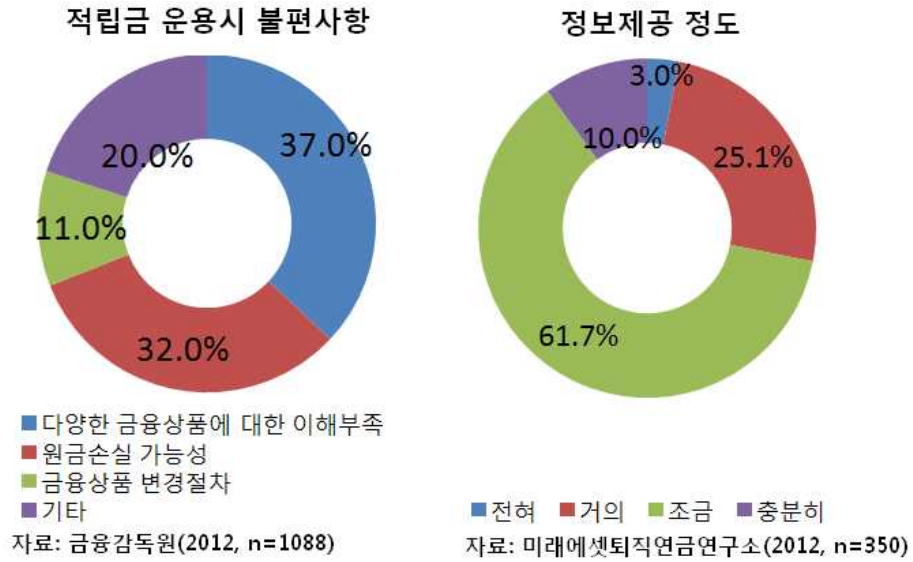
3. 가입자 교육제공 실태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정 안내사항인 가입자에 대한 자료제공 정도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적립금 운용 시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부족(37.0%) 및 변경절차를 모름(11.0%) 등 금융상품 및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으로 조사됨.
- 퇴직연금제도 관련 정보를 받은 정도를 조사결과, 약 28.1%가 전혀 또는 거의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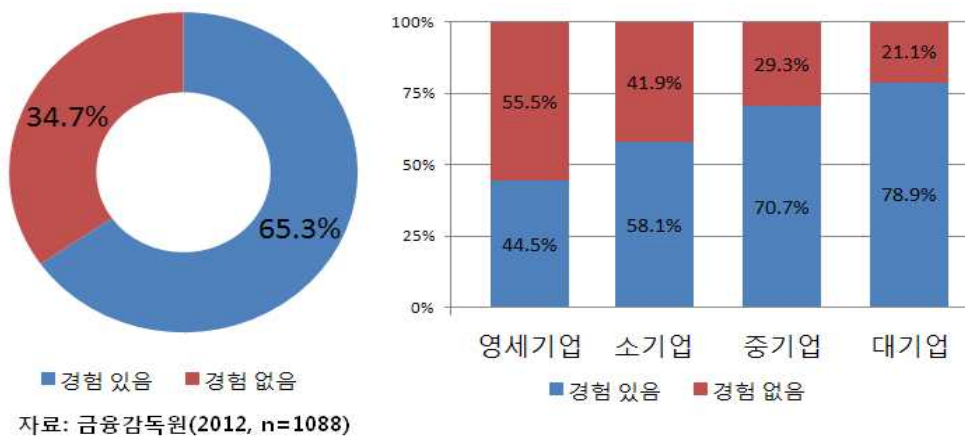
〈그림 1〉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불편사항 및 정보제공 수준



■ 또한, 가입 근로자의 약 35%가 가입자 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법률상 의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일부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2005. 12) 시행 후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가입자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정상적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특히, 가입자 교육 경험은 기업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응답률이 낮게 나타나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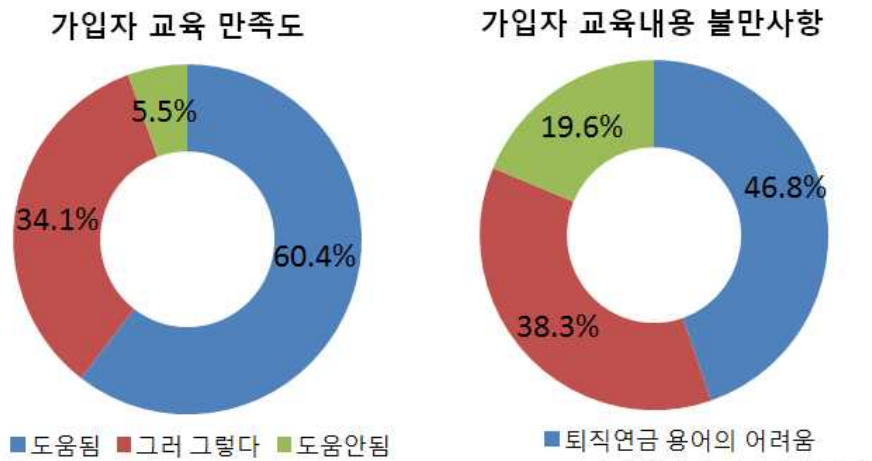
〈그림 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경험 유무



■ 가입자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이상의 수준에 불과하며 다양한 불만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자 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이 60.4%이며,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비율이 34.1%로 나타남.
- 가입자 교육내용에 관한 불만사항으로는 퇴직연금 용어의 어려움이 46.8%, 노후생활 관련 컨설팅 미흡 38.3%, 책자 등 서면교육의 한계 19.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만족도 및 교육 불만사항



자료: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n=350)

자료: 금융감독원(2012, n=1088)

4. 가입자 교육 문제점

〈가입자 교육내용 범위 측면〉

■ 법령에서 규정한 가입자 교육은 퇴직연금 교육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노후소득보장 장치로서 연금제도의 기능 및 중요성 등을 제대로 인식하기에 어려운 실정임.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공통사항, DB형제도 및 DC형제도 추가사항 이외에 연금가입의 중요성, 노후자산관리방법, 운용상품과 자산운용에 대한 기초지식, 노후대책관련 내용 등이 없어 가입자 교육내용이 매우 제한적임.

- 영국은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공적연금 등 노후대비를 위한 모든 연금제도에 관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입자 교육의 범위를 대폭 확대
 - 일본도 노후설계 및 연금제도 특성, 금융상품의 구성과 특징, 자산운용의 기초지식 등 우리나라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

〈가입자 교육 내실화 측면〉

- 법률상 가입자 교육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 가입자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형식적인 교육에 치우치고 있음.
 - 법령에서 가입자 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입·경력직원별, 직급별, 가입·수급자별, 가입·운영·수급단계별 세부적인 방법과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가입자 교육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가입자나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내용 추가를 요청을 하지 않는 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함.
 - 반면, 미국은 ERISA법에 가입자 교육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수탁자 책임 여부에 따라 투자조언과 투자교육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퇴직연금보호법(2006) 제정 이후 DC형제도 교육이 강화됨.
 - 일본은 자율적인 가입자 교육 가이드라인 준수와 함께 후생노동성이 교육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등 기업의 교육제공 참고자료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퇴직연금 불완전 판매 이후 가입자 교육 강화를 적극 검토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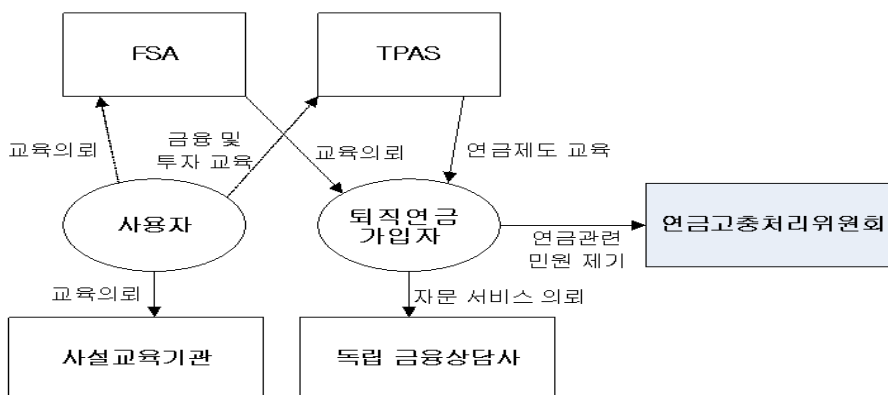
〈교육전문가 양성 측면〉

- 가입자가 정확하게 퇴직연금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한 운용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제공이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입자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 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 반면 일본은 DC Planner 및 DC Advisor 등 자격자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자 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가입자 교육의 기회와 질을 높이는데 기여
 - 실제 일본의 퇴직연금 교육현장에서는 DC Planner와 DC Advisor 등 전문 자격 유무를 확인한 이후에야 비로소 가입자 교육이 실시되는 형편임.

〈가입자 교육 인프라 측면〉

- 법령에서는 수탁자(사용자 또는 금융회사)만이 가입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와 수탁자 간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질의 가입자 교육이 제공되기 어려운 문제가 상존함.
- 사용자 또는 금융회사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가입자 교육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낮고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최소한 또는 형식적인 가입자 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입자 교육 인프라가 부재한 실정
- 반면 영국은 연금제도 교육서비스센터(TPAS: The Pension Advisory Service)를 설치하여 가입자가 다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화된 가입자 교육인프라를 구축함.
 - TPAS는 연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사용자가 TPAS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의뢰할 경우 TPAS 교육프로그램을 사설 교육기관에서 제공받을 수도 있음.

〈그림 4〉 영국의 가입자 교육 체계



5. 가입자 교육 방향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은 가입 및 수급과정에서 가입자가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에 가입자 교육의 범위를 퇴직연금에 국한하지 않고 노후설계, 운용될 금융상품의 이해, 자산운용 기초지식, 연금운용 등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에서처럼 가입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 등은 가입자 교육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운용하고 다양한 가입자 교육 자격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법령에서 가입자 교육의 세부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가입자 교육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하여야 하는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감독할 필요가 있음.

- ■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퇴직연금규약에 법령상의 가입자 교육 세부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법령은 퇴직연금규약에 가입자 교육제공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정한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 교육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부족하며, 교육이 형식적 또는 일부내용이 누락될 가능성도 상존하므로 퇴직연금규약에 동 교육내용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선 필요

- ■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가입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퇴직연금 교육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운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현행처럼 사용자 및 사업자가 가입자 교육의 주체가 되고, 퇴직연금 교육서비스기관은 사용자 및 사업자의 가입자 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이해상충 문제 개선)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교육서비스 기관은 투자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영업자 또는 영세사업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kiri](#)

[별첨 1]

개정 근퇴법	근퇴법 시행령
<p>제32조(사용자의 책무)</p> <p>① 사용자는 법령 및 퇴직연금 규약을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제외)를 설정한 사용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사업의 퇴직연금 운용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p> <p>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p> <p>①~④ 생략</p> <p>⑤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32조(퇴직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책무) 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3 생략</p> <p>4. 법 제32항 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는 경우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협조할 것</p> <p>제33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p> <p>법제32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용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p> <p>1. 제도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각목의 사항</p> <p>가.급여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p> <p>나.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p> <p>다.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p> <p>라.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p> <p>마.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p> <p>바.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p> <p>사.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p> <p>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목의 추가 교육사항</p> <p>가.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현황</p> <p>나.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p> <p>다.직전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p> <p>라.그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사항</p> <p>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목의 추가 교육사항(다만 다목과 라목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교육 실시)</p> <p>가.사용자의 부담금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p> <p>나.법제2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p> <p>다.분산투자, 적립식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p> <p>라.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p>